식품법 B.E.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2호(1979)1)

B.E.2522(1979) 식품법 제5조, 제15조, 제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중보건부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은 공중보건부령(ministrerial regulation, 이하 "보건부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1항.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식 Orr.6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6에서 지정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항. 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2부씩 첨부해야 한다.

- (1) 식품 품질의 준수 및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장비의 목록.
- (2) 식품의 수입 및 저장을 위한 설비와 인근 건물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 (3) 식품 저장 시설의 정확한 규격과 다음 사항들을 표시한 내부 도면
- (A) 식품 저장 시설의 지리적 위치
- (B) 식품 품질의 유지에 필요한 식품 저장, 환기 및 장비 설치를 위한 구분 공간.
- **3항.** 판매 목적의 식품 수입 허가서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7을 사용해야 한다.
 - 4항. 판매 목적의 식품수입 허가서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1) 식품 저장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알맞은 조명 및 환기를 제공할 것.
-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하며 그 수는 저장 식품의 양에 알맞은 수량이 있어야 할 것.
 - (3) 식품을 유형별로 알맞은 비율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 4/1항.²⁾ 식품의약품청이 위험하거나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한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수입허가는 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원산지국가의 소관정부기관 또는 동정부기관이 인정한 민간기관이 그 식품이 모든 표준을 한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979}년 11월 22일의 관보 제96권/제193편/특별호(Special Issue) 8쪽:B.E.2522(1979). (Royal Gazette Volume 96 / Part 193 / Special Issue Page 8/ 22 November B.E.2522(1979))

^{2) 4/1}항은 "식품법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1호(B.E. 2547)에 의해 추가되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확인서를 원산지 국가가 발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식약청이 정한 국내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할 식품의 품질 보증서를 사용하여 수입할 모든 식품이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밝히도록 한다.

5항. 판매 목적으로 식품수입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8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8에서 지정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판매 목적의 식품수입 허가가 갱신되면 원래의 허가서에 갱신 사실이 기록되거나 새로운 허가서가 발급된다.

6항. 판매 목적으로 식품수입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서를 대체할 문서(이하 "대체 허가서"라 한다)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9를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9에서 지정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체 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래의 허가서와 동일한 형식의 문서의 표지에 "대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7**항.** 판매 목적으로 식품수입을 허가받은 자가 수입상품 저장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0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10에서 지정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식품 저장 장소의 변경을 승인하는 허가권자는 그런 사실을 허가서나 대체 허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수입식품 저장 장소의 변경에 대한 승인에는 2항을 준용한다.

제8조. 본 보건부령에 따른 신청서들은 공중보건부 식품의약품청 식품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 제출되는 신청서는 공중보건부 지방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다.

> B.E.2522(1979) 11월 17일 제정 분쏨 마띤 공중보건부 장관

[별첨]

- 1. 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 2. 식품 수입 허가서.
- 3. 식품 수입 허가서 기한 연장 신청서.
- 4. 식품 수입 대체허가서.
- 5. 식품 수입장소 또는 식품 보관장소 이전 신청서.

(더 자세한 정보는 시행규칙 참조)

주석: "식품법 B.E. 2522"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는 각각 "판매목적의 상품수입 허가신청", "허가 기한 연장 신청", "대체허가서 발급신청" 및 "수입식품의 수입장소 또는 보관장소 이전 신청"을 규정하면서, 관련기준, 절차 및 조건은 보건부령으로 준수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보건부령이 제정되었다.

B.E. 2522(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1호(B.E. 2547)"3)

주석: 현재 일부 유형의 식품들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소비에 부적합한 식품의 유입을 통제하여 그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 것은 국제관행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본 보건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청"이 발표한 유해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국가의 소관정부기관 또는 동 정부기관이 인정한 민간기관이 해당 식품이 표준을 충족한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건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프롬낫(Phromnat) 2019년 2월 20일 수정 B.E. 2562(2019)

^{3) 2014}년 5월 25일의 관보 제121권/제33A편/13쪽. (Royal Gazette Volume 121 / Part 33 A / Page 13 / Date 25 May 2014).